“유엔사”의 DMZ출입통제 및 DMZ법 반대를 규탄한다.

“유엔사”는 12월 17일 성명을 발표하여 남쪽 비무장지대에 대한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은 유엔사령관의 책임이며 비무장지대에 대한 출입허가권도 유엔사군정위에 있다며 국회에서 추진중인 비무장지대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는 틀렸다.

첫째, “유엔사”가 말한 민사행정은『유엔사규정 525-2』에 정의된 바에 따르면 ‘한국정부와의 합의하에 한국정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미국정부가 수립하는 행정’이다.『유엔사규정 525-2』작성의 기준이 되는 상위문서인 미 국방부지시(DoD Directive)와 미 합참의『합동교범 3-57』(Joint Publications 3-57)에 의하면 민사행정은 점령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정부가 한국영토인 남쪽 비무장지대의 주권을 미국정부에게 이양하여 행정을 펼치도록 합의한 적이 있는가? 한국정부는 정전협정을 존중은 했을지언정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전협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적이 없고, 더구나 비무장지대에서 미국정부가 행정을 펼치도록 한 어떤 법적합의도 없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영토 일부지역인 비무장지대에 대해 점령정책을 펼치고 있다면 이는 적국에 대해서만 점령을 인정한 1907년 육전규칙 위반이다.

둘째, “유엔사”의 민사행정권을 인정한다 해도 비무장지대법을 제정하는 일은 법률행위로 비군사적 영역이다.『군사정전위원회 편람』제4집에 의하면 북한 인민군사령부가 정치·경제·문화적 문제를 군정위 안건으로 올릴 때마다 “유엔사”는 일관되게 이들 비군사적 문제는 정전협정과 무관한 안건이라며 안건상정을 거부해왔다.
비무장지대법 추진은 한국영토인 비무장지대에서 법적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주권의 행사이다. 즉 “유엔사”가 그토록 강조해온 비군사적 문제이다. 정전협정 전문은 이 협정이 순수한 군사적 협정임을 명시했으므로 비군사적문제에 대해 “유엔사”는 어떤 관할권도 갖지 않는다.

셋째, 비무장지대 출입허가권은 “유엔사군정위”에 있다고 했다. 정전협정 9항은 ‘군인이나 사민이나 비무장지대에 드러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두 가지 예외를 두었다.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드러가는 인원’이다. 전자는 “유엔사령관”이 책임진다. 그러나 최근에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을 불허한 유해발굴사업은 군정위가 허가권을 갖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전협정에 의하더라도 “유엔사령관”은 유해발굴사업을 위한 비무장지대 출입통제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유엔사군정위”가 군정위의 반쪽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전협정 20항은 군정위가 오직 쌍방에 의해서만 구성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인민군이 1994년 군정위에서 철수하면서 군정위는 붕괴된 것이다. “유엔사”가 운영하는 “유엔사군정위”는 정전협정과 무관한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출입허가권을 갖는 군정위가 없는 상황에서 민사행정과 구제사업 외에는 허가주체가 없는 것이다.

넷째, 정전협정 10항에 의하면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인원수를 “유엔사령관”이 정할 수는 있지만 이들을 호위할 민정경찰수는 군정위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군정위가 없는 상황이

므로 민정경찰 호위없이 민간인들이 비무장지대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방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권을 일부행사한다 해도 안전을 책임질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다. 즉 “유엔사”는 정전협정상으로도 협정 17항이 규정한 모든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것이다.

다섯째, “유엔사”는 외환유치공작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정전협정 6항에 의하면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에서, 로부터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정전협정 17항에 의해 “유엔사령관”은 협정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대북전단과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으로 날아갔다. 한미연합부대인 오산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이들 비행체가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적대행위를 일으키기 전에 조치를 취할 임무가 있었다. 충분한 감시·통제 자원을 갖고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에서, 로부터 북으로까지 명백한 적대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유엔사령관”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여섯째, 비무장지대법은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실행하기 위한 이행법률이다. 9.19남북군사합의서는 2018년 대한민국전자관보를 통해 법령으로 정식 공포되었다. 윤석열정부가 외환유치에 열중하던 2024년 6월 전면효력중지 시켰지만 폐기되지는 않았다. 이재명정부는 복원을 공약했고 이는 국무회의비준동의로 즉시 복원될 수 있다. 비무장지대법 제정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감시초소(GP)철수, 판문점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유해발굴, 역사유적공동조사 및 발굴 등 비군사적 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주권적 입법행위이다. 이들 사업은 정전협정상의 사업과 중복되지만 정전협정체결주체가 아닌 9.19남북군사합의서 체결주체 간에 합의한 사업이다. 9.19남북군사합의서는 역대 남북합의서와 달리 정전협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전협정체결주체인 “유엔사”가 9.19남북군사합의서 이행사업과 법률에 대해 간섭한다면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유엔사”는 2021년 대선 당시 윤석열후보의 백골OP방문을 비난하며 “유엔사”의 ‘법적지시’를 어겼다고 했다. “유엔사”가 한국에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는가라는 비판이 쇄도하자 “유엔사”는 홈페이지의 성명을 하루 만에 삭제한 바 있다. 이번 “유엔사”의 성명 역시 그때와 전혀 다르지 않다. “유엔사”는 불법적인 내정간섭 중단하고 즉각 해체하라.

1. “유엔사”는 비군사적문제에 대한 정전협정적용을 중단하라.
2. “유엔사”는 비무장지대출입권, 군사분계선통과권 행사를 포기하라.
3. 남측비무장지대 민사행정 운운은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위반이다. 점령정책 포기하라.
4. 정전협정관리능력 의심되는 “유엔사”는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존중하라.
5. “유엔사”는 외환유치공작을 차단하지 못한 책임지고 불법적 출입통제 중단한 뒤 1975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즉각 해체하라.